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확대 〉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96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7일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배송에 나섰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쿠팡 카플렉스(쿠팡 본사와 계약을 맺고 배송을 수행해 건당 수수료를 받는 계약 형태로써 본인이 원하는 날짜 및 시간대에 원하는 소량의 물량 배송을 신청하고 본인의 자가용 차량으로 배송하는 사람)인 여성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택배기사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그러나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 등 그날그날 일감을 수행하는 배달라이더들도 특수고용직인 퀵서비스 기사로서 산재·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쿠팡 카플렉스만 산재·고용보

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무제공자 정의에서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삭제하여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을 한정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모든 사람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5제1호).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u>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u> 을 말한다.	1. ----- ----- ----- ----- <u>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u>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를 ①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거나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아 ②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③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④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가 포함되는데 2024년 9월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는 138만 8,000여명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직종 확대 경과>

-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방문교사, 레미콘기사
-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레미콘기사→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포함)
- ('20.7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방문강사(학습지 방문교사 → 교육교구방문강사까지 포함)
- ('21.7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22.7월) 화물차주 확대(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포함)
- ('23.7월*)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
 - * 전속성 요건 폐지되어 여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
- ('24.1월) 방과후 강사

*자료: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는 산재보험 당연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 보험행정에 관한 각종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료를 각각 1/2씩 분담함.¹⁾

현행법은 노무제공자를 타인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데, 이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이나, 노무제공 양태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가 요청되는 직종에 대한 사각지대를 창출할 위험도 병존한다고 볼 것임.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⑥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⑧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신고할 수 있다.

개정안은 노무제공자의 실제적인 요건인 ‘타인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인정되는 이상 이들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다양한 노무제공 양태에 대응하여 산재보험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산재보험의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임.

다만, ①개정안은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에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한 노무제공행위가 있는 이상 노무제공자를 인정하고 있는데, 노무제공자의 전신(前身)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한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른 것²⁾이라는 점,

②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1인 자영업자 등 소위 ‘프리랜서’가 노무제공자에 포함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³⁾와의 구별이 곤란할 소지가 있다는 점,⁴⁾ ③노무제공자의 실제적 요건에 해당하는

2) 노사정위원회(2002. 7. 22.), 「비정규근로자 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 의안번호 제176743호) 검토보고서, p. 58.

3)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근로자가 노무제공자의 개념에 포섭될 소지가 있어 근로자가 노무제공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소지가 있는데, 보험료 부담 등 서로 상이한 보험체계를 가진 두 지위가 혼재되는 경우 보험료 부과 등 보험행정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험행정 사무에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게 되고 일시적으로 계약 등에 따라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자들까지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하며,⁵⁾ 이는 보험 신고·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연관이 될 수 있는 만큼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0

5) 자영자가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 되면 보험가입자(사업주)를 누구로 볼 것인지, 보험료 부과하는 방식 등도 불명확할 수 있음.